

더샵 광양베이센트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더샵 광양베이센트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http://더샵광양베이센트.com/>) 운영과 견본주택 관람인원 제한 및 방문예약관람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방문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예비당첨자 포함) 시 방문시간 예약은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관람 신청 당첨자(계약자)의 해당 날짜 및 시간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관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방문 예약하신 고객 외 동반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열화상카메라, 전신소독기,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더샵 광양베이센트 대표문의(☎1855-1330)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의 수가 상담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이점 양지 바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0.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양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양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 |
|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 | | 85초과 | 3년 |
| | 그 외 | 85이하 | 3년 |
| | | 85초과 | 1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0.)**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일반공급 | | |
|--------|---|---|---|---|---|---|-----------------|
| | 기관추천 필요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2순위)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더살광양베이센트.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광양시)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여부를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광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지역 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 시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신고 거부, 서류미비, 미제출한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일까지(최대 3년) | 소유권이전일까지(최대 3년) |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행위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본 아파트 사업부지는 광양항금지구 내에 조성되는 체비지로서 사업주체가 체비지대장에 소유권자임을 기재하여 법률상 적법하게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제3자간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당사자로부터의 가치분신청 및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민원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결정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됩니다. 환급이행의 경우 수분양자분께서 기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환급대상이며,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되어 청약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환급이행시 청약통장 부활)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적격여부 확인) | 계약체결 |
|-----|---|------------------|--|------------------|--|---------------------------------------|---------------------------------------|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 | | |
| 일 정 | 2021년 08월 30일(월) | 2021년 08월 31일(화) | 2021년 09월 01일(수) | 2021년 09월 02일(목) | 2021년 09월 09일(목) | 2021년 09월 11일(토)~ 2021년 09월 19일(일) | 2021년 09월 24일(금)~ 2021년 09월 30일(목)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방문 접수 (10:00 ~ 16:00) | 방문 접수 (10:00 ~ 16:00)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현장접수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 광양베이센트 견본주택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7.0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33069호(2021.08.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552-2번지 일원(황금지구 1-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3층 5개동 총 727세대

[특별공급 244세대(일반[기관추천] 42세대, 다자녀가구 70세대, 신혼부부 85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2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비분 | 타입별 세대수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분양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 | 계 |
| 민영 주택 | 2021000580 | 01 | 084.8849A | 84A | 84.8849 | 26.3784 | 111.2633 | 51.9109 | 163.1742 | 40.1401 | 255 | 339 | 33 | 33 | 67 | 10 | 23 | 166 | 173 | 12 |
| | | | | 84B | 84.8257 | 26.3598 | 111.1855 | 51.8745 | 163.0600 | 40.1121 | 24 | | | | | | | | | |
| | | | | 84E | 84.9769 | 26.4069 | 111.3838 | 51.9670 | 163.3508 | 40.1836 | 60 | | | | | | | | | |
| | | 02 | 084.6846C | 84C | 84.6846 | 26.3161 | 111.0007 | 51.7883 | 162.7890 | 40.0453 | 32 | 32 | 3 | 3 | 6 | - | 2 | 14 | 18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114.8544A | 114A1 | 114.8544 | 35.6916 | 150.5460 | 70.2382 | 220.7842 | 54.3120 | 26 | 51 | - | 5 | - | 1 | - | 6 | 45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 114.9968P | 114PA | 114.9968 | 35.7358 | 150.7326 | 70.3254 | 221.0580 | 54.3792 | 2 | 2 | - | - | - | - | - | - | 2 | - |
| 07 | 117.6292A | | | | | | | | | | | | | | | | | | | |
| | | 08 | 139.8321P | 139PA | 139.8321 | 43.4535 | 183.2856 | 85.5134 | 268.7990 | 66.1233 | 1 | 1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 | 139.2157P | 139PB | 139.2157 | 43.2619 | 182.4776 | 85.1363 | 267.6139 | 65.8318 | 1 | 1 | - | - | - | - | - | - | 1 | - |
| | 10 | 139.9603P | 139PC | 139.9603 | 43.4933 | 183.4536 | 85.5916 | 269.0452 | 66.1839 | 1 | 1 | - | - | - | - | - | - | 1 | - |
| | 11 | 139.8177P | 139PD | 139.8177 | 43.4490 | 183.2667 | 85.5044 | 268.7711 | 66.1164 | 1 | 1 | - | - | - | - | - | - | 1 | - |
| | 12 | 145.8463P | 145PA | 145.8463 | 45.3224 | 191.1687 | 89.1912 | 280.3599 | 68.9672 | 2 | 2 | - | - | - | - | - | - | 2 | - |
| | 13 | 145.3377P | 145PB | 145.3377 | 45.1644 | 190.5021 | 88.8801 | 279.3822 | 68.7267 | 2 | 2 | - | - | - | - | - | - | 2 | - |
| 합 계 | | | | | | | | | | 727 | 727 | 42 | 70 | 85 | 18 | 29 | 244 | 483 | 25 |

※ 84A,84B,84E 타입의 경우, 1개의 주택형인 084.8849A로 묶음청약을 받으며, 084.8849A 주택형 당첨자는 84A,84B,84E 타입 중 1개의 타입으로 동호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 114A1,2 타입의 경우, 1개의 주택형인 114.8544A로 묶음청약을 받으며, 114.8544A 주택형 당첨자는 114A1,114A2 타입 중 1개의 타입으로 동호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85㎡ 초과 주택형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 주택형 | 타입 | 전용면적 (㎡) | 동별 (라인별) | 층별 구분 | 해당 세대 수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 | | | | | | | | | | 1회 | 2회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납부 시 | | | | | | | |
| | | | | | | | | | | 계약 시 | 30일 이내 | 2022.01.10 | 2022.05.10 | 2022.10.10 | 2023.05.10 | 2023.09.11 | 2024.01.10 | | | | | | | | |
| 084.8849A | 84A | 84.8849 | 101동103호 | 1층 | 1 | 50,912,680 | 233,087,320 | - | 284,000,000 | 10,000,000 | 1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28,400,000 | 85,200,000 | | | | | |
| | | | | 2층 | 2 | 53,601,730 | 245,398,270 | - | 299,000,000 | 10,000,000 | 1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29,900,000 | 89,700,000 | | | | |
| | | | | 101동3~5호 | 2층 | 9 | 56,470,050 | 258,529,950 | - | 315,000,000 | 10,000,000 | 2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94,500,000 | | | |
| | | | | | 3~4층 | 18 | 57,366,400 | 262,633,600 | - | 320,000,000 | 10,000,000 | 2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96,000,000 | | | |
| | | | | 103동1,3호 | 5~10층 | 54 | 58,262,750 | 266,737,250 | - | 325,000,000 | 10,000,000 | 2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97,500,000 | | | |
| | | | | | 11~20층 | 90 | 59,159,100 | 270,840,900 | - | 330,000,000 | 10,000,000 | 2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99,000,000 | | | |
| | | | | 84B | 84.8257 | 103동2호 | 21층 이상 | 81 | 60,234,720 | 275,765,280 | - | 336,000,000 | 10,000,000 | 2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100,800,000 | |
| | | | | | | | 2층 | 1 | 56,470,050 | 258,529,950 | - | 315,000,000 | 10,000,000 | 2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31,500,000 | 94,500,000 | | |
| | 3~4층 | 2 | 57,366,400 | | | | 262,633,600 | - | 320,000,000 | 10,000,000 | 2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96,000,000 | | | | | |
| | 5~10층 | 6 | 58,262,750 | | | | 266,737,250 | - | 325,000,000 | 10,000,000 | 2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32,500,000 | 97,500,000 | | | | | |
| | 11~20층 | 10 | 59,159,100 | | | | 270,840,900 | - | 330,000,000 | 10,000,000 | 2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99,000,000 | | | | | |
| | 21층 이상 | 5 | 60,055,450 | | | | 274,944,550 | - | 335,000,000 | 10,000,000 | 2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100,500,000 | | | | | |
| | 84E | 84.9769 | 104동3,4호 | | | | 2층 | 2 | 56,649,320 | 259,350,680 | - | 316,000,000 | 10,000,000 | 21,600,000 | 31,600,000 | 31,600,000 | 31,600,000 | 31,600,000 | 31,600,000 | 31,600,000 | 31,600,000 | 31,600,000 | 94,800,000 | | |
| | | | | | | | 3~4층 | 4 | 57,545,670 | 263,454,330 | - | 321,000,000 | 10,000,000 | 22,100,000 | 32,100,000 | 32,100,000 | 32,100,000 | 32,100,000 | 32,100,000 | 32,100,000 | 32,100,000 | 96,300,000 | | | |
| | | | | 5~10층 | 12 | 58,442,020 | 267,557,980 | - | 326,000,000 | 10,000,000 | 22,600,000 | 32,600,000 | 32,600,000 | 32,600,000 | 32,600,000 | 32,600,000 | 32,600,000 | 32,600,000 | 97,800,000 | | | | | | |
| | | | | 11~20층 | 20 | 59,338,370 | 271,661,630 | - | 331,000,000 | 10,000,000 | 2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33,100,000 | 99,300,000 | | | | | | |
| | 084.6846C | 84C | 84.6846 | 101동1호 | 21층 이상 | 22 | 60,234,720 | 275,765,280 | - | 336,000,000 | 10,000,000 | 2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33,600,000 | 100,800,000 | | | | |
| | | | | | 1층 | 1 | 53,422,460 | 244,577,540 | - | 298,000,000 | 10,000,000 | 1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29,800,000 | 89,400,000 | | | | |
| | | | | | 2층 | 1 | 56,290,780 | 257,709,220 | - | 314,000,000 | 10,000,000 | 2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94,200,000 | | | | |
| | | | | | 3~4층 | 2 | 57,187,130 | 261,812,870 | - | 319,000,000 | 10,000,000 | 21,900,000 | 31,900,000 | 31,900,000 | 31,900,000 | 31,900,000 | 31,900,000 | 31,900,000 | 31,900,000 | 31,900,000 | 95,700,000 | | | | |
| | | | | | 5~10층 | 6 | 58,083,480 | 265,916,520 | - | 324,000,000 | 10,000,000 | 2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32,400,000 | 97,200,000 | | | | |
| | | | | | 11~20층 | 10 | 58,979,830 | 270,020,170 | - | 329,000,000 | 10,000,000 | 2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32,900,000 | 98,700,000 | | | | |
| | | | | | 084.9461 D | 84D | 84.9461 | 102동1호 | 21층 이상 | 12 | 59,876,180 | 274,123,820 | - | 334,000,000 | 10,000,000 | 2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33,400,000 | 100,200,000 |
| | | | | | | | | | 1층 | 1 | 56,290,780 | 257,709,220 | - | 314,000,000 | 10,000,000 | 2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31,400,000 | 94,200,000 |
| 2층 | | | | | | | | | 2 | 59,159,100 | 270,840,900 | - | 330,000,000 | 10,000,000 | 2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33,000,000 | 99,000,000 | |
| 3~4층 | | | | | | | | | 4 | 60,055,450 | 274,944,550 | - | 335,000,000 | 10,000,000 | 2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33,500,000 | 100,500,000 | |
| 5~10층 | | | | | | | | | 12 | 60,951,800 | 279,048,200 | - | 340,000,000 | 10,000,000 | 24,000,000 | 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102,000,000 | |
| 11~20층 | | | | | | | | | 20 | 61,848,150 | 283,151,850 | - | 345,000,000 | 10,000,000 | 24,500,000 | 34,500,000 | 34,500,000 | 34,500,000 | 34,500,000 | 34,500,000 | 34,500,000 | 34,500,000 | 34,500,000 | 103,500,000 | |
| 114.8544A | 114A1 | 114.8544 | 101동2호 | 21층 이상 | 24 | 62,744,500 | 287,255,500 | - | 350,000,000 | 10,000,000 | 2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35,000,000 | 105,000,000 | | | | | |
| | | | | 1층 | 1 | 65,771,784 | 301,116,560 | 30,111,656 | 397,000,000 | 10,000,000 | 2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119,100,000 | | | | | |
| | | | | 2층 | 1 | 69,582,240 | 318,561,600 | 31,856,160 | 420,000,000 | 10,000,000 | 3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126,000,000 | | | | | |
| | | | | 3~4층 | 2 | 70,576,272 | 323,112,480 | 32,311,248 | 426,000,000 | 10,000,000 | 3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42,600,000 | 127,800,000 | | | | | |
| | | | | 5~10층 | 6 | 71,735,976 | 328,421,840 | 32,842,184 | 433,000,000 | 10,000,000 | 3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43,300,000 | 129,900,000 | | | | | |
| | | | | 11~20층 | 10 | 72,895,680 | 333,731,200 | 33,373,120 | 440,000,000 | 10,000,000 | 3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44,000,000 | 132,000,000 | | | | | |
| | 114A2 | 114.8544 | 101동2호 | 21층 이상 | 6 | 74,055,384 | 339,040,560 | 33,904,056 | 447,000,000 | 10,000,000 | 3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44,700,000 | 134,100,000 | | | | | |
| | | | | 2층 | 1 | 69,085,224 | 316,286,160 | 31,628,616 | 417,000,000 | 10,000,000 | 3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41,700,000 | 125,100,000 | | | | | |
| | | | | 3~4층 | 2 | 70,244,928 | 321,595,520 | 32,159,552 | 424,000,000 | 10,000,000 | 3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127,200,000 | | | | | |
| | | | | 5~10층 | 6 | 71,404,632 | 326,904,880 | 32,690,488 | 431,000,000 | 10,000,000 | 3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43,100,000 | 129,300,000 | | | | | |
| | | | | 11~20층 | 10 | 72,398,664 | 331,455,760 | 33,145,576 | 437,000,000 | 10,000,000 | 3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0층 | 12 | 72,398,664 | 331,455,760 | 33,145,576 | 437,000,000 | 10,000,000 | 3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131,100,000 | | |
| | | | | 11~20층 | 20 | 73,558,368 | 336,765,120 | 33,676,512 | 444,000,000 | 10,000,000 | 3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133,200,000 | | |
| | | | | 21층 이상 | 24 | 74,718,072 | 342,074,480 | 34,207,448 | 451,000,000 | 10,000,000 | 3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135,300,000 | | |
| 117.6292A | 117A | 117.6292 | 102동103호 | 1층 | 1 | 65,109,096 | 298,082,640 | 29,808,264 | 393,000,000 | 10,000,000 | 2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117,900,000 | | |
| | | | | 1층 | 3 | 68,588,208 | 314,010,720 | 31,401,072 | 414,000,000 | 10,000,000 | 31,400,000 | 41,400,000 | 41,400,000 | 41,400,000 | 41,400,000 | 41,400,000 | 41,400,000 | 41,400,000 | 124,200,000 | |
| | | | | 2층 | 6 | 72,398,664 | 331,455,760 | 33,145,576 | 437,000,000 | 10,000,000 | 3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131,100,000 | |
| | | | | 3~4층 | 12 | 73,558,368 | 336,765,120 | 33,676,512 | 444,000,000 | 10,000,000 | 3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44,400,000 | 133,200,000 | |
| | | | | 5~10층 | 36 | 74,718,072 | 342,074,480 | 34,207,448 | 451,000,000 | 10,000,000 | 3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135,300,000 | |
| | | | | 11~20층 | 60 | 75,877,776 | 347,383,840 | 34,738,384 | 458,000,000 | 10,000,000 | 3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45,800,000 | 137,400,000 |
| | | | | 21층 이상 | 52 | 77,037,480 | 352,693,200 | 35,269,320 | 465,000,000 | 10,000,000 | 36,500,000 | 46,500,000 | 46,500,000 | 46,500,000 | 46,500,000 | 46,500,000 | 46,500,000 | 46,500,000 | 46,500,000 | 139,500,000 |
| 114.9968P | 114PA | 114.9968 | 105동1,2호 | 팬트 | 2 | 115,639,056 | 529,419,040 | 52,941,904 | 698,000,000 | 10,000,000 | 5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209,400,000 | | |
| 139.8321P | 139PA | 139.8321 | 101동4호 | 팬트 | 1 | 140,655,528 | 643,949,520 | 64,394,952 | 849,000,000 | 10,000,000 | 7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54,700,000 | | |
| 139.2157P | 139PB | 139.2157 | 103동1호 | 팬트 | 1 | 139,992,840 | 640,915,600 | 64,091,560 | 845,000,000 | 10,000,000 | 7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84,500,000 | 253,500,000 | | |
| 139.9603P | 139PC | 139.9603 | 104동3호 | 팬트 | 1 | 140,655,528 | 643,949,520 | 64,394,952 | 849,000,000 | 10,000,000 | 7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54,700,000 | | |
| 139.8177P | 139PD | 139.8177 | 105동3호 | 팬트 | 1 | 140,655,528 | 643,949,520 | 64,394,952 | 849,000,000 | 10,000,000 | 7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54,700,000 | | |
| 145.8463P | 145PA | 145.8463 | 102동2,4호 | 팬트 | 2 | 146,619,720 | 671,254,800 | 67,125,480 | 885,000,000 | 10,000,000 | 7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88,500,000 | 265,500,000 | | |
| 145.3377P | 145PB | 145.3377 | 104동1,2호 | 팬트 | 2 | 146,122,704 | 668,979,360 | 66,897,936 | 882,000,000 | 10,000,000 | 7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88,200,000 | 264,600,000 | | |

■ 주택형 표시

| | | | | | | | | | | | | | |
|--------------|-------------|-----------|-----------|----------------|-----------|-----------|-----------|-----------|-----------|-----------|-----------|-----------|-----------|
| 공고상(청약사) 주택형 | 084.8849A | 084.6846C | 084.9461D | 114.8544A | 114.7426B | 117.6292A | 114.9968P | 139.8321P | 139.2157P | 139.9603P | 139.8177P | 145.8463P | 145.3377P |
| 약식표기 | 84A,84B,84E | 84C | 84D | 114A1 114A2 | 114B | 117A | 114PA | 139PA | 139PB | 139PC | 139PD | 145PA | 145PB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84D, 117A 주택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이외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평형별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중 101동 1층 3호(84A)의 보조주방 창호, 102동 1층 3호(117A)의 침실4 창호는 주동출입구와 인접 위치하여 조망권 및 일조 제한이 불가피하오니,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택형의 같은 층 대비 공급금액 차등 적용)
- 상기 공급금액 중 114A1,2의 경우 세대별 면적은 같으나 호실별 특화시설 유무에 따라 공급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본 세대 계약 시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은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다로그 등)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수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 「주택법」 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

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미계약 시 추가 선택품목 계약(유상옵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이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6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 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084.8849A | 084.6846C | 084.9461D | 114.8544A | 114.7426B | 117.6292A | 합 계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7 | 1 | 1 | - | - | - | 9 | |
| | 장애인 | 전라남도 | 10 | 1 | 2 | - | - | - | 13 |
| | | 광주광역시 | 2 | - | - | - | - | - | 2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 | 1 | - | - | - | 4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7 | 1 | 1 | - | - | - | 9 | |
| | 중소기업 근로자 | 4 | - | 1 | - | - | - | 5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3 | 3 | 6 | 5 | 6 | 17 | 70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67 | 6 | 12 | - | - | - | - | 85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0 | - | 1 | 1 | 1 | 1 | 5 | 18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3 | 2 | 4 | - | - | - | - | 29 | |

| | | | | | | | |
|-----|-----|----|----|---|---|----|-----|
| 합 계 | 166 | 14 | 29 | 6 | 7 | 22 | 244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절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일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일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광역시 및 전라남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전라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전남 동부지방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 | | | |
|---------------|----|----------------|----|---|
| | | | |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이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8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합니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이하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 ~12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 7,094,206원~ 8,513,046원 | 7,094,206원~ 8,513,046원 | 7,393,648원~ 8,872,376원 | 7,778,024원~ 9,333,628원 | 8,162,400원~ 9,794,87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 7,094,206원~ 9,931,887원 | 7,094,206원~ 9,931,887원 | 7,393,648원~ 10,351,106원 | 7,778,024원~ 10,889,232원 | 8,162,400원~ 11,427,359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872,377원~ 11,829,835원 | 9,333,629원~ 12,444,837원 | 9,794,880원~ 13,059,838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2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단,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에 따릅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합니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30%이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10,111,430원 | 10,611,119원 |
|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130%초과 ~ 160%이하 | 7,839,209원~ 9,648,256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611,742원~ 11,829,835원 | 10,111,431원~ 12,444,837원 |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광양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점제 적용 불가)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 2순위
- 전 주택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1)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4)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이후 변동 시 당첨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 해당지역 광양시 ※ 기타지역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1순위 | 전용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75%) 및 추첨제(25%)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전용 85㎡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30%) 및 추첨제(7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 | | | |
|--|-----|-------------------|--|
| | | |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2순위 | 전 주택형 추첨제 10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 또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광양시 및 전라남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분 | 내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총점 | 84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 제외)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기준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15, 2018. 12. 11.>
 - 1. 수도권: 1년
 -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2021.08.30(월) (청약Home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건본주택(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일반공급 | 1순위 | 해당지역 | 2021.08.31(화) 08:00~17:30 | | |
| | | 기타지역 | 2021.09.01(수) 08:00~17:30 | | |
| | 2순위 | | 2021.09.02(목) 08:00~17:30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구분 | 구비사항 |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부금 포함) 통장 |

| |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시간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정보취약계층 건본주택 방문청약 신청자는 신청 시 제출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전 서류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동서류 (기관추천 포함) | ○ | |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건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특별공급신청서 | 본인 | · 건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부양가족 |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 |
| 다자녀가 구 | ○ |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자녀 | · 건본주택에 비치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

| | | | | | |
|----------------|--|---|------------------------|---|--|
| 특별공급 | | | 직계존속 |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및 해당자 | •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 | •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 | | | |
|------------------|---|---------|------------------------|--|--|--|--|--|
| | | | 확인각서 | | | |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 입양의 경우 | |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건분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자녀 |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 | |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 |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 | | 직계비속 |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소득증빙서류 참조] | | | |
| | | ○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분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 ○ | 무주택 소명 서류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사업주체 요구서류 |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 |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 |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 제출 시]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해당직장 -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재직증명서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무서 - 해당직장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 전년도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 - 접수장소 | |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세무서 |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일반공급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
| | | ○ |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뒤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 | ○ | |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직계비속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직계존속 |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점수를 산정할 경우 |
| | | ○ |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 직계비속 |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 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 | |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
| | | ○ | 서약서 | 본인 | · 건본주택에 비치 |
|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 ○ | 무주택 소명 서류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사업주체 요구서류 |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 방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

| | |
|----------------------------|---|
| | <p>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양시 거주신청자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p>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일정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09.09.(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반공급 | 1순위 | |
| | 2순위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http://www.applyhome.co.kr>)또는 스마트폰앱(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1.09.09.(목) ~ 2021.09.18.(토) (10일간) |
| 인터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09.0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사전 서류제출기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1년 09월 11일(토) ~ 09월 19일(일) / 9일간(10:00~16:00) | 2021년 09월 24일(금) ~ 09월 30일(목) / 7일간 (10:00~16:00) | 더샵 광양베이센트 견본주택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88) |
| 사전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코로나19 및 사업주체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채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1차 계약금 | 경남은행 | 207-0124-3149-03 | 우리자산신탁(주) | 입금 시 입금자명 동호수+계약자 성명 예)101동1001호홍길동, 1011001홍길동, 101-1001홍길동 |
|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 경남은행 | 각 세대별 가상계좌 추후통보 | 우리자산신탁(주) | |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으로 상기 모계좌 [경남은행 207-0124-3149-03,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호실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호실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 사항 |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공통 기본서류 | ○ |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
| | ○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 불가 |
| 제3차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계약자)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 필수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 | ○ | | 인감도장(계약자) | |
| | ○ | | 위임장(계약자) | |
| | ○ |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인정, 계약불가)**

■ 계약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청약 시 사용되었던 주택형 및 주택형(양식)으로 계약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허가 설계도서 상 주택형 및 주택형으로 표기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체결전 서류 심사는 방문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고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합과 제3자간의 소송건 제외)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

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기존에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사용승인(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 용도사용 이후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Ⅶ

추가 선택품목

[1]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비고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B | 12,900,000 | 1,290,000 | 11,610,000 | |
| 84C | 13,000,000 | 1,300,000 | 11,700,000 | |
| 84D | 13,700,000 | 1,370,000 | 12,330,000 | |
| 84E | 12,700,000 | 1,270,000 | 11,430,000 | |
| 114A1,2 | 17,200,000 | 1,720,000 | 15,480,000 | |
| 114B | 17,300,000 | 1,730,000 | 15,570,000 | |
| 117A | 17,900,000 | 1,790,000 | 16,110,000 | |
| 114PA | 21,400,000 | 2,140,000 | 19,260,000 | |
| 139PA | 26,000,000 | 2,600,000 | 23,400,000 | |
| 139PB | 26,800,000 | 2,680,000 | 24,120,000 | |
| 139PC | 26,200,000 | 2,620,000 | 23,580,000 | |
| 139PD | 26,600,000 | 2,660,000 | 23,940,000 | |
| 145PA | 31,700,000 | 3,170,000 | 28,530,000 | |
| 145PB | 31,200,000 | 3,120,000 | 28,080,000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발코니 확장대금 | 경남은행 | 207-0124-3140-04 | 우리자산신탁(주) | 입금 시 입금자명 동호수+계약자 성명 예)101동1001호홍길동, 1011001홍길동, 101-1001홍길동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

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 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 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나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에어컨(유상옵선)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타입 | 옵선 | 에어컨 설치 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 금(90%) | 제조사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B,E | 선택 1 | 거실 + 주방 + 침실1 | 4,700,000 | 470,000 | 4,230,000 | LG |
| | 선택 2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7,000,000 | 700,000 | 6,300,000 | |
| 84C,D | 선택 1 | 거실 + 주방 + 침실1 | 4,700,000 | 470,000 | 4,230,000 | |

| | | | | | |
|----------------|------|---|------------|-----------|-----------|
| | 선택 2 | 거실 + 주방(조망형 다이닝 평면용) + 침실1 | 4,800,000 | 480,000 | 4,320,000 |
| | 선택 3 | 거실 + 주방(조망형 다이닝 평면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7,200,000 | 720,000 | 6,480,000 |
| | 선택 4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8,100,000 | 810,000 | 7,290,000 |
| 114A1,2/114B | 선택 1 | 거실 + 주방 + 침실1 | 5,000,000 | 500,000 | 4,500,000 |
| | 선택 2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8,100,000 | 810,000 | 7,290,000 |
| 117A | 선택 1 | 거실 + 주방 + 침실1 | 5,000,000 | 500,000 | 4,500,000 |
| | 선택 2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7,300,000 | 730,000 | 6,570,000 |
| | 선택 3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8,100,000 | 810,000 | 7,290,000 |
| 114PA | | 거실(하층) + 주방(하층) + 침실1(하층) + 침실2(하층) + 침실3(하층) + 거실2(상층) + 침실4(상층) | 10,000,000 | 1,000,000 | 9,000,000 |
| 139PA,PB,PC,PD |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 전실 + 침실2 + 침실3 + 침실4 | 11,000,000 | 1,100,000 | 9,900,000 |
| 145PA |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1 전실 + 침실2 + 침실3 + 침실4 | 11,000,000 | 1,100,000 | 9,900,000 |
| 145PB | | 거실(하층) + 주방(하층) + 침실1(하층) + 침실2(하층) + 거실(상층) + 침실3(상층) + 침실4(상층) | 11,000,000 | 1,100,000 | 9,900,000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로 실외기 설치 외 다른 물품의 적재를 금지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사의 도산, 품질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84C, 84D 타입은 조망형 다이닝 평면 선택 시 주방면적이 넓어지므로 주방용 실내기 용량을 키운 선택2 또는 선택3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117A 타입은 수납강화형 평면 선택 시 침실4가 대형 현관창고로 변경되므로 침실4가 제외된 선택1 또는 선택2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145PB 타입은 2개층 개방형 거실로 층고가 높아 다른 타입과 달리 거실 천장이 아닌 복도 천장에 실내기가 설치됩니다.

[3] 주방(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세부사항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상판+벽체 | 84A,B,E | 4,300,000 | 430,000 | 3,870,000 |
| | | 84C,D | 3,700,000 | 370,000 | 3,330,000 |

| | | | | | |
|------------|---|--------------------------------|-----------|---------|-----------|
| | | 114A1,2 / 114B 117A / 114PA | 4,500,000 | 450,000 | 4,050,000 |
| | | 139PA,PB,PC,PD / 145PA | 4,700,000 | 470,000 | 4,230,000 |
| | | 145PB | 5,200,000 | 520,000 | 4,680,000 |
| 인덕션 | [삼성] NZ63R6707MR / 인덕션 3구 | 전 타입 | 1,150,000 | 115,000 | 1,035,000 |
| | [LG] BEI3GTBI / 인덕션 3구 | | 1,250,000 | 125,000 | 1,125,000 |
| 식기 세척기 | [삼성] DW60T7075FS / 12인용 | 전 타입 | 1,200,000 | 120,000 | 1,080,000 |
| | [LG] DUB22SB / 12인용 | | 1,300,000 | 130,000 | 1,170,000 |
| 비스포크 키친핏 | 비스포크 키친핏 3도어형 [삼성] (냉장+변온+김치) + 돌장 | 전 타입 | 5,200,000 | 520,000 | 4,680,000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 RQ22K5L(R)01EC + 돌장 | 전 타입 | 1,600,000 | 160,000 | 1,440,000 |
| | 빌트인 김치냉장고 [LG] K221PR14BL1/R1 + 돌장 | | 1,600,000 | 160,000 | 1,440,000 |
| 음식물 분쇄처리기 | 음식물분쇄기 | 전 타입 | 700,000 | 70,000 | 630,000 |
| 본(本)다이닝 평면 | 홈바형 다이닝수납장+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84A,B,E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다이닝장식장+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 114B / 117A | 4,300,000 | 430,000 | 3,870,000 |
| 조망형 다이닝 평면 | 대면형주방(아일랜드후드)+다이닝장식장+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벽체 +주방 우물천장+천장디자인판넬+간접조명 | 84C,D | 8,300,000 | 830,000 | 7,470,000 |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MMA) 주방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은 기본형이 적용됩니다. 기본형/유상옵션형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상판 전면 두께(다용도실 가구 상판 참조)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온수분배기와 의 간섭으로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제품 설치위치와 싱크대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분쇄처리기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음식물탈수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하부 가림막 길이가 변경됩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스포크 키친핏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도어의 컬러는 준공 전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냉장고 공간이 1개소 제공되며(견본주택은 빌트인 냉장고로 전시함),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븐은 기본 제공품목입니다. 비스포크 키친핏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전기오븐은 소형 프라이팬 서랍장과 함께 쿡탑 하부에 설치되며, 견본주택 쿡탑 하부에 적용된 대형 프라이팬 서랍장 및 편리한 조리도구 서랍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여닫이도어가 설치됩니다.

※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本)다이닝 유상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E타입의 본(本) 다이닝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인 84A타입과 형태 및 크기, 구성, 주방 우물천정의 형태 및 크기 등이 상이하니, 유닛 VR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84B,84E 본(本) 다이닝 유상옵션에 포함된 홈바형 다이닝 수납장의 가구조명 스위치, 콘센트의 형태 및 위치는 본공사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C타입의 알파룸 창호(1500mm*1150mm)는 건립세대인 84D타입의 알파룸 창호보다 작습니다. 조망형 다이닝 유상옵션 선택시 반드시 유닛 VR 자료를 확

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망형 다이닝 유상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C타입의 조망형 다이닝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인 84D타입과 형태 및 크기, 구성, 주방 우물천정의 형태 및 크기 등이 상이하니, 유닛 VR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C,D 조망형 다이닝 유상옵션 선택 시, 다이닝 장식장 간접조명 스위치의 위치 및 형태,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마감 및 천장 디자인판넬의 나누기도는 본공사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아일랜드 상판과 측판이 만나는 조인트부위는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특성상 이음매 및 단차가 발생합니다.

※ 84C,D 조망형 다이닝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ㄷ' 주방(침니형 렌지후드, 기본형 툴장) 및 인조대리석(MMA) 주방상판, 주방벽체 타일마감이 제공되며, 주방 우물천장 및 천장 디자인판넬, 간접조명은 미적용됩니다. 또한 아일랜드장의 크기, 하부장/아일랜드장 디자인 및 구성(기본형 'ㄷ' 주방 : 여닫이도어 구성 / 조망형다이닝 : 서랍 구성) 등이 변경되니, 유닛 VR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本)다이닝 유상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114B타입의 본(本) 다이닝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인 117A타입과 형태 및 크기, 구성, 주방 우물천정의 형태 및 크기 등이 상이하니, 유닛 VR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4A1,2/117A 본(本) 다이닝 유상옵션에 포함된 다이닝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기 사용시 열에 의한 가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공사의 여건에 따라 다이닝 장식장 가구조명 스위치, 콘센트의 형태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평면 옵션(본(本)다이닝, 조망형다이닝)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정 및 간접조명, 천장 디자인판넬(84C,D 조망형다이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형 및 옵션 선택형에 따라 주방 우물천장정의 크기가 상이합니다.

[4] 기타 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세부사항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중문 | 현관중문 (1픽스+2연동) | 전 타입 | 2,000,000 | 200,000 | 1,800,000 |
| | 복도 유리슬라이딩 도어(4EA) | 114A1(테라스형) | 3,200,000 | 320,000 | 2,880,000 |
| | 거실 유리슬라이딩 도어(4EA) | 117A | 3,300,000 | 330,000 | 2,970,000 |
| 안방 불박이장 | W 3,300 | 84B | 2,300,000 | 230,000 | 2,070,000 |
| | W 3,600 | 84A,C,E / 114PA | 2,500,000 | 250,000 | 2,250,000 |
| | W 3,900 | 114A1,2 / 114B / 117A | 2,700,000 | 270,000 | 2,430,000 |
| 대형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 + 주방 팬트리 | 84A | 700,000 | 70,000 | 630,000 |
| | 대형 드레스룸 | 84B,E | 500,000 | 50,000 | 450,000 |
| 수납강화형 평면 | 복도팬트리 + 롬인룸(유리슬라이딩도어) | 114B | 5,300,000 | 530,000 | 4,770,000 |
| | 대형현관창고 + 복도장 + 주방 팬트리 | 117A | 4,700,000 | 470,000 | 4,230,000 |
| 스타일링바스 | 건식세면공간 + 수납장 + 디자인 벽판넬 + 유럽산바닥타일 + 수건걸이/옷걸이 | 84A,B,C,D,E / 114A1,2 / 114B / 117A / 114PA / 145PB | 2,600,000 | 260,000 | 2,340,000 |
| 거실,주방 바닥타일 | 유럽산 | 84A,B,C,D,E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114A1,2 / 114B / 114PA | 5,700,000 | 570,000 | 5,130,000 |
| | | 117A | 5,100,000 | 510,000 | 4,590,000 |
| | | 139PA,PD | 7,700,000 | 770,000 | 6,930,000 |
| | | 139PB,PC / 145PA | 8,100,000 | 810,000 | 7,290,000 |
| | | 145PB | 11,500,000 | 1,150,000 | 10,350,000 |
| 청정환기시스템 | 150CMH | 114PA(상층) / 145PB(상층) | 1,250,000 | 125,000 | 1,125,000 |
| | 200CMH | 84A,B,C,D,E / 114A1,2 / 114B / 117A / 114PA(하층), 145PB(하층) | 1,300,000 | 130,000 | 1,170,000 |
| | 300CMH | 139PA,PB,PC,PD / 145PA | 1,500,000 | 150,000 | 1,350,000 |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 거실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 + 거실, 침실 감성조명 | 84A,B,C,D,E / 114A1,2 / 114B / 117A | 1,500,000 | 150,000 | 1,350,000 |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중문(현관중문, 거실/복도 유리슬라이딩도어)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선택 시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이 적용되며, 신발장하부 간접조명 ON/OFF를 위한 동작감지센서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 중문(현관중문, 거실/복도 유리슬라이딩도어)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17A 거실 유리슬라이딩도어 선택시, 기본형 알파룸에 적용되는 목창호는 제공되지 않으며, 무상옵션(와이드리빙) 선택이 불가합니다.
- ※ 114A 복도 유리슬라이딩도어는 평면 특성상 114A1(테라스형)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며, 114A2(팬트리형)은 선택 불가합니다.
- ※ 거실/주방 바닥타일 선택 시, 타일 패턴 및 칼라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타일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타일의 적용 범위는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거실/주방 바닥타일 자재 특성상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는 K.S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의 스타일링바스 유상옵션은, 건립세대와 형태 및 크기 구성 등이 상이하니, 유닛 VR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배수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천정에 설치됩니다. 또한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디자인 벽판넬 나누기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스타일링바스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욕실사이즈, 욕실장의 형태와 구성, 양변기 위치, 욕실 악세사리 설치품목 및 위치, 욕실문 및 세면대의 형태, 바닥마감재(스타일링바스 바닥 : 유럽산타일 / 기본형(케어룸) 바닥 : 강마루)가 변경됩니다.
- ※ 117A 타입은 수납강화형 평면 선택시 대형현관창고에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형 침실4에 적용되는 목창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117A 타입은 수납강화형 평면 미선택시, 기본형 현관창고 내부 수납은 천정고정형 시스템가구로 변경 구성되며(타공판넬 미제공), 기본형 현관창고 도어의 힌지는 일반 국산힌지가 적용됩니다.
- ※ 114B 타입 수납강화형 평면 선택시, 기본형 알파룸에 적용되는 목창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84A,84B,84E 타입은 대형 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드레스룸 내부 수납 구성이 변경됩니다. (기본형 드레스룸 선택시, 악세서리 월판넬 미제공) 대형 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형 알파룸에 적용되는 목창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 대신 청정 환기유닛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 옵션 미선택 시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가 제공되며, 청정환기시스템용 3.5인치 Color TFT LCD 룸콘이 설치됩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일반 전열교환기 대비 큰 용량의 제품으로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필터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권장해드립니다.
- ※ 청정환기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본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청정환기시스템은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기능은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정에 간접 LED조명(점소등 제어)이 적용됩니다. (알파룸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 ※ 거실은 월패드, 침실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홈스타일초이스(무상옵션)

| 항목 | | 기본형 | 선택형 | 비고 |
|------|-----|----------|------------------|----|
| 117A | 알파룸 | 거실 + 알파룸 | 와이드 리빙 (알파룸 미설치) | |

- ※ 홈스타일 초이스 선택사항은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됩니다.
- ※ 홈스타일 초이스를 미선택한 경우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추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품질, 품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선택형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선택형 (와이드리빙) 선택시 거실 유리슬라이딩 도어 유상옵션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유상옵션 등 입금계좌(발코니 확장대금 제외)]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추가선택품목 | 우리은행 | 1005-704-198275 | (주)포스코건설 | 입금 시 입금자명 동호수+계약자 성명 예)101동1001호홍길동, 1011001홍길동, 101-1001홍길동 |

※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계약시 제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약정금액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가구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Ⅷ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 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운동시설 : 배드민턴장 1개소, 체력단련시설 4개 등 설치 계획 (종류와 개수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X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공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사업부지는 광양항금지구 내에 조성되는 체비지로서 사업주체가 체비지대장에 소유권자임을 기재하여 법률상 적법하게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제3자간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당사자로부터의 가치분신청 및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민원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예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자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197g 입니다. |
|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84A, 84D, 117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84E 타입은 견본주택 건립세대 중 84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VR,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C 타입은 견본주택 건립세대 중 84D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VR,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자료(CG, VR 등)상의 마감재 표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마감재(강마루, 타일, 인조석재류, 벽지 등)의 무늬 및 패턴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할 것 •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장형 세대를 계약하고자 하실 경우 건본주택 내 비치된 착공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천장환기구, 화장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출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세대 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야간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설치된 필로티 하부 조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더샵 지킴이 시스템 및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및 도어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을 계약자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수납은 세대 및 타입별로 가구 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및 VR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장의 하부에는 마루가 시공되지 않으며, 벽체와 천장에는 벽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싱크볼 하부장 가림판 앞 공간은 분배기 설치로 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분양홍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 학교관련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지구 인근 학교 학생배치여건, 학생유입 규모, 공동주택 분양 공고 상황,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심사결과 등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변경되거나 설립되지 못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 이전까지는 전담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인근 학교에 배치(혹은 개발지구 내 학교 개교시까지 골약초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골약중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 | |
|-----------------------------|---|
| <p>설계 및 단지내부여 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광양시와 체결 할 예정 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광양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전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법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견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소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측벽 로고의 위치,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3층~지하1층 1,124대로 구성되며, 상가주차장은 지하2층에 별도 계획됩니다. (상가주차 23대 별도) • 본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사업지 서측(102동 주변)에 1개소, 남측(103동 주변)에 1개소가 위치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지하2층 출입구 및 차로의 높이는 2.7m(주차면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하3층, 지하1층은 택배차량 진입 불가능함) • 근린생활시설 입주(입점)자를 위한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인근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빛 간섭 및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체에 의해 인허가 및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환류,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바닥준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주(입점)자를 위한 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 내 별도구획(23대)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임의로 공동주택 전용공간으로 주차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접근하는 차량은 공동주택 주차장 주 출입구, 부 출입구를 공유하여 진출입하며, 진출입 시 공동주택 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므로, 이에 대해 추후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한 비상차량 출입구는 비상시 근린생활시설(남측)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공동주택 차량은 이용할 수 없으며(교통영향평가 조건),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동부 지하층 자동문 밖(지하 주차장)의 벽면은 도장마감으로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상 단위세대의 동·향·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조량 확보를 위해 반사판, 반사경 등이 101동,103동,104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실제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 사항으로 일부세대에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및 눈부심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은 102동 하부(주민운동시설, 생활지원센터 등), 104동 하부(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에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과 인접하여 급기, 배기를 위한 환기구(DA)가 시공되므로, 계약전 반드시 위치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상가의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탈취기 및 배기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D/A(설비 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보관소는 1개동 당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동은 2개소가 병렬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최종 인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에 설치되는 택배보관함과 우편물 수취함은 돌출형으로 개인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스카이라운지의 출입구는 103동 지상1층에 설치되며, 103동의 피난용승강기를 공용으로 이용합니다. 이는 인허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25~26층 두 개층에 걸쳐 84A와 114B타입 세대 사이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위치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하, 좌우 인근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동(101동) 일부세대와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세대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출입구의 높이, 규격, 진입 방향은 동별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중 101동 1층 3호(84A)의 보조주방 창호, 102동 1층 3호(117A)의 침실4 창호는 주동출입구와 인접 위치하여 조망권 및 일조 제한이 불가피하오니,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및 재활용보관소 인근 세대는 소음, 냄새, 분진, 시각적 간섭,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 된 물놀이장,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필로티·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수경시설·주민운동시설·D/A(설비환기구)·근린생활시설·관리사무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과 남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101동과 103동 하부에 위치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석축 등의 구조물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입구, 문주,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위치, 레벨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건본주택 모형 및 분양 사무실에 비치된 도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내 각 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주차면과의 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하주차장내의 주동 위치에 대하여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의 운반은 승강기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갯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입주민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시공시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각 동 최고층수에 따라 120m/min(최고속도기준)의 속도로 적용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탑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TV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침해, 빛의 산란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동(102동)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기가 103동 및 104동의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 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 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지 내, 택배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옥외 보안등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벽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은 1등급에 준하여 설계/시공 됩니다.
- 비상발전기 운전 시 운전대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헬룸 또는 제연 헬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단지내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물놀이장, 수경시설,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조경공간 내 텃밭, 어린이 물놀이장, 수경시설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에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리 혹은 이용을 위한 인원이 접근 가능하여 인근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각 동 옥상층 일부에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3동 스카이라운지 전면 옥상층 일부에는 옥상조경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리 혹은 이용을 위한 인원이 접근 가능하여 소음발생 및 인근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각 동 옥상층 일부에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저층부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 될 수 있고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Bi를 포함하는 싸인물의 위치, 개소, 수량 및 규격은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지 내부로 차량이 출입할 수는 없으나, 소방차량 및 비상차량 등은 단지 내 구성된 비상차량동선을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습니다. PD, AD, PIT, EPS, TPS 공간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단차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단지 내부로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은 없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단위세대의 층고는 2,850mm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의 천장고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선택형(가구, 가변형 벽체 등) 및 유상옵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합니다. 인조석재류(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MMA) 등)는 본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됩니다.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 및 발코니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으며,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닿아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B,84E 타입은 건본주택 건립세대 중 84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VR,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미건립세대인 84C 타입은 건본주택 건립세대 중 84D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VR,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미건립세대인 114A1,114A2,114B,114PA,139PA,139PB,139PC,139PD,145PA,145PB 타입은 건본주택 건립세대 중 117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VR,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 및 깊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구 및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타입별로 반입 혹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줄어들어 카달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어 개폐방향, 가전 설치 위치 등이 달라집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이 없어야 합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의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 및 선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대비 도막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여건 등으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두께 및 안목치수 등이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 미시공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가구 하부 걸레받이 미시공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디딤판의 인조석재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인조석재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공사 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과 무관합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바닥 물흐름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등의 금속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손잡이, 힌지 등의 형태, 색상,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중 84E 타입은 주방창호(1100mm*450mm) 및 다용도실 창호(800mm*600mm) 크기는 유사타입의 주방/다용도실 창호보다 작으며, 이는 인허가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중 114A 타입의 발코니 앞 테라스는 동과 층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테라스 유무에 따라 114A-1 타입, 114A-2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모형 및 도면을 확인하기 바람,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중 114B 타입의 드레스룸 창호(800mm*600mm)크기는 유사타입의 드레스룸 창호보다 작으며, 이는 인허가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 139PC 타입의 주방창호(1100mm*450mm) 크기는 유사타입의 주방창호보다 작으며, 이는 인허가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 145PB 타입의 드레스룸, 다용도실, 침실3의 창호(800mm*600mm)는 크기는 유사타입의 드레스룸, 다용도실, 침실3의 창호보다 작으며, 이는 인허가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단위세대(2층 이상 ~11층 이하)에는 소방관 진입에 이용되는 창호가 세대별 1개소 설치되며(위치는 세대별 상이하며, 해당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 위치임을 알려주는 표지가 창호 전면에 부착됨), 이는 인허가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는 단층형(139PA, 139PB, 139PC, 139PD, 145PA), 복층형(114PA, 145P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층형 세대의 경우 테라스가 인접하게 위치하여 시야/조망 간섭,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에는 인접세대 테라스와 분리를 위해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세대 계약자는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추후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 테라스 바닥마감은 별도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의 색상은 투명이며, 로이유리적용시 유리특성으로 인해 투명한 색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목창호 문선, 현관 아트판, 천정 몰딩은 시공상 타카핀 흔적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대피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련 소방법에 따라 필요시 일부 구간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열교환 환기장치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작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 내에 설치되는 배수구, 천장 점검구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14A1, 114A2, 114B, 117A 욕실2(부부욕실)에는 반건식 특화욕실(Deluxe Bath)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식공간인 파우더형 세면대 하부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습식공간인 샤워부스 및 변기부스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114A1, 114A2, 114B, 117A, 139PA, 139PB, 139PC, 139PD, 145PA, 145PB타입의 욕실 내 양변기 부스 바닥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침실에 적용되는 냉매배관은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커버가 시공됩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배기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 시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단자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단자함의 위치는 관련 법규에 의거 침실 내부(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이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패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3KW 이상의 제품을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안방 발코니에는 리모컨 타입 전등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안방 및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거실에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체 감지기는 1~2층(필로티층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여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 단자함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 발생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스마트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월패드,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품목별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일부 타입의 경우 주방 및 다용도실 창호 크기가 유사타입과 상이하며, 이는 인허가사항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의 더샵 지키미 시스템 및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동작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6.0.0, iOS 11.0버전 이상이 필요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가능한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키키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톡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 시연용 AI 스피커 및 생활 가전제품들은 기본으로 고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미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kakao I 연동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 (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 기능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헤이 카카오, 카카오톡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기능(조명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 기기연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앱,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제어와 정보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헤이 카카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짜,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의 카카오톡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카카오에 있습니다. •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키키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톡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 시연용 생활 가전제품들은 기본으로 고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미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의 종류(9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hing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SKT NUGU Smart Home 및 NUGU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하여 세대 기기제어 및 세대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샵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 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 |

| | |
|------------|---|
| | <p>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중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사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TTS와 같은 부가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T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 (www.sktsmar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T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가입을 권장합니다.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인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 제품(8종: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세대별 LG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전환 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 부대 복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마감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이는 동 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인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되는 기간동안 임대료 지급은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단지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X

기타 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비 고 |
|-----------------------------|----------------------|------|---|
|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망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 3항 제3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
|--|---|
| <p>보증채무의내용 (보증약관 제1조)</p> | <p>공사는 「주택도시금융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종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p>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p> | <p>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
| <p>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p> | <p>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p> |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지평디앤피(주),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시공사 (주)포스코건설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에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 세대의 소유권이 시행수탁자에서 분양계약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된 세대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소유권이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의무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을 인지합니다.
4.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로서의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시행위탁자가 부담합니다.
5.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6.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시행수탁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합니다.
8.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시행수탁자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신탁계좌의 잔액 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구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
| 상호 | 우리자산신탁(주) | 지평디앤피(주) | (주)포스코건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108, 3층(중동)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
| 등록번호 | 110111-2003236 | 110111-5593979 | 174611-0002979 |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안내

더샵 광양베이센트 견본주택 / 분양문의 ☎1855-1330 (10:00~18:00) / [홈페이지 <http://더샵광양베이센트.com/>]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88 (중동 1732-3)
- 운영기간 : 2021.08.20.(금) ~ 별도 고지 예정
- 운영시간 : 10:00~18:00
- 운영방식 : 방문관람 예약제(홈페이지) + 사이버모델하우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